『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』 사업
기업 컨설팅 용역

제 안 요 청 서

2025. 8.

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

Ⅰ. 사업 안내

1. 사업 개요

- ㅇ 사 업 명 : 『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』
- ㅇ 과 제 명 :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
- ㅇ 사업기간 : 2023. 4. 1. ~ 2025. 12. 31.(33개월)
- ㅇ 주관기관 :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
- ㅇ 참여기관 : (재)광주테크노파크,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

2. 사업 목적

- ㅇ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의 수요기업 맞춤형 임상·비임상 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시스템과 실증 데이터 기반 제품고도화 제작 지원 시스템 구축

3. 사업 주요 내용

- ㅇ (기반구축) 지역 내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시설·장비 구축 및 활용
- ㅇ (임상실증지원 플랫폼 구축) 주관기관-참여기관 연계 임상·비임상 실증 지원 체계를 통한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및 기술지원, 치과의료산업 국내·외 산·학·병·연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
- ㅇ (기술지원) 임상의 매칭 임상 시험·평가·인증 지원(임상 IRB 작성, 사용성 평가 등), 시제품 및 제품고도화 지원, 비임상 시험·평가·인증 지원(비임상 실증, 사용적합성 평가 등)
- ㅇ (인력양성) 디지털 치과의료산업에 적합한 치과의료 소재부품 개발 장비 활용이 가능한 기업 및 지원기관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

4. 기대효과

- ㅇ 치과의료소재부품 디지털화 및 제품고도화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 제고 및 국외 시장 진출 활성화, 선순환구조 마련 가능
- ㅇ 임상 연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 및 실증 플랫폼 활용 디지털기술기반 치과의료소재부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 가능
- ㅇ 지역 내 기구축된 생체의료산업 인프라 및 국내·외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로 치과의료산업 선도도시로 도약 가능

Ⅱ. 과업 개요

1. 과업 개요

- ㅇ 과 업 명 : 『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』 사업 기업 컨설팅 용역
- ㅇ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- ㅇ 과업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
- ㅇ 용 역 비 : (부가세포함) 19,500,000원
- ㅇ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(VAT포함 2,000만원 이하 용역)

  *관련근거 :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

2. 과업 목적

- ㅇ 지역 내 치과의료소재·부품 기업별 제품/기술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개선 방향 도출로 제품의 기술 수준과 품질을 향상시키고,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 유도
- ㅇ 유망 진출국에 대한 시장조사와 현지 진입전략 수립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업역량(인증, 인허가, 통관, 마케팅 등) 확보 지원
- ㅇ 컨설팅 결과 기반 기업별 기술개발 제안요청서(RFP), 제품고도화/글로벌 시장진출/역량강화 및 후속연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시행

3. 과업 주요 내용

- ㅇ 기업 현황조사(정량적 데이터 기반)
- ㅇ 기업별 수요 분석(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진행)
- ㅇ 기업 수요별 맞춤형 지원 전략 제시
- ㅇ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제안요청서(RFP)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
- ㅇ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 보고서 작성

Ⅲ. 과업 주요 내용

1. 과업 기간

○ 수행 기간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

2. 추진 목표

○ 광주광역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업 수혜기업 대상 제품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수행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수출역량 강화

3. 추진 내용

○ 현황조사: 데이터 기반 현황조사(업력, 규모, 기술력, 제품군, 수출 등)

○ 수요분석: 기업별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진행으로 수요 확인

○ 전략도출: 기업별 분석을 통한 기업군 분류(역량강화군, 기술개발군 등)

○ RFP도출: 기술개발군 대상 RFP 작성 및 실행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

○ 컨설팅보고서 작성: 역량강화군 대상 기술진단, 제품고도화,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수립, 기업역량강화 및 지원사업 연계방안 등 컨설팅 보고서 작성

4. 추진 체계

구분	역할	비고
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	• 용역 수행관리 및 결과 평가	발주기관
용역기업	• 용역 수행	사업수행기관

5. 추진 체계

가. 컨설팅 범위

○ 공간적 범위: 광주광역시 내 치과의료 소재·부품 산업 분야 종사 기업

○ 내용적 범위: 기업의 제품 및 기술 현황 진단, 애로사항 분석, 제품고도화 전략 수립, 글로벌시장 진출 방안 마련, 기술개발 과제(RFP) 도출 등

나. 과업 세부내용

ㅇ 기업 현황조사

- 정량화된 데이터 기반 광주광역시 내 치과의료 소재·부품 기업의 기업별 현황(업력, 규모, 기술력, 제품군, 수출 현황 등) 조사
- 기업군 1차 분류(역량강화군, 기술개발군 등) 체계 마련(분석 툴 적용)

ㅇ 기업별 수요 분석

-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, 제품 개선 필요성, 글로벌 진출 수요 등 파악
- 시장 진입 장애요소(인증, 인허가, 규제 등) 관련 기업 의견 확인

ㅇ 기업 수요별 맞춤형 지원 전략 제시

- 정량데이터 및 수요분석 기반 기업군 최종 분류
- 기업군 별 맞춤형 지원 전략 도출 및 제시

ㅇ 기술개발 제안요청서(RFP)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(해당 시 제공)

- 제품 개선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별 R&D 수요 정리
- 기업이 실제로 추진가능한 수준의 기술개발 제안요청서(RFP) 작성
- 개발 목적, 핵심 기술, 추진 일정, 예산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 수립

ㅇ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 보고서 작성(기업별 보고서 제공)

- 기술진단 및 제품고도화 컨설팅 : 기업별 주력 제품 및 보유 기술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, 생산공정/품질관리/기술적합성, 설계 등 고도화 전략 수립, 산업 내 유사 기업 및 기술 트렌드, 경쟁 제품과의 비교분석, 품질인증(ISO, GMP 등) 취득 전략 및 규제 대응방안 제안
-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수립 컨설팅 : 진출 유망국의 시장 동향 및 경쟁 분석, 진입 국가별 인증·인허가 절차, 통관 요건, 바이어 요구사항 분석,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(현지화 전략, 유통채널 구성, 온라인 수출 플랫폼 활용 등), 해외 전시회 참가, 바이어 매칭, 파트너 발굴 등 실무적 접근 방향 제시
- 기업역량 강화 및 후속 연계 방안 컨설팅 :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마케팅/R&D/인증 대응 전략, 정부/지자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분석 및 코칭, 기술이전/산·학·연 협력 등 중장기 지원 체계 제안

다. 수행 절차

착수보고 (착수 후 10일 이내)	→	조사·분석	→	기업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	→	최종보고 (용역종료 후 15일 전·후)
착수보고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		기업현황조사 및 수요분석		기업 별 지원전략 도출, 기업 맞춤형 RFP 도출,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 ***필요시 중간보고회 개최**		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수 대응

6. 산출물(용역선정 업체에 요청하는 산출물)

○ 용역 결과 보고서 20부(A4 용지 100매 이상) 및 USB 1식

- USB 1식: 용역결과보고서 한글파일 및 발표 PPT 파일 등 일체
- 용역 결과보고서: 원본1부, 사본 19부 양면 제본 후 납품

Ⅳ. 과업수행 일반지침

1. 과업의 개요

○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과업수행업체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는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기업 컨설팅(발주 사업명)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.

2. 과업의 일반 사항

○ 본 용역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“갑”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“갑”의 해석·지시에 따른다.

○ 용역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- “갑”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
- 계약기간 내에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
-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(저작권, 특허권 등 지적, 물적 소유권)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,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된다.

3.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

○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“갑”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.

○ 용역기간은 “갑”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다.

4. 과업의 준수사항

○ “을”은 본 과업지시서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,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○ “갑”은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

변경할 수 있다.

○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.

○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“갑”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○ “갑”은 핵심인력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당 또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○ 과업수행 중 “을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핵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“갑”에게 교체 핵심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.

5. 과업수행 성과물

○ 성과품 제출내역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

단 계	산 출 물	출력물	제출일정
수행 완료	용역 결과 보고서	20부	검수완료 시

○ 용역성과물은 “갑”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 영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“갑”에서 보완·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
○ 용역성과물의 귀속

-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“갑”에 있고, 과업 수행완료 즉시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를 “갑”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